

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					
①과세기간	년	월	일부터	상 호	③성명
	년	월	일까지	②사업자등록번호	
1.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	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				
	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				
	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				
	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				
	⑧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액(⑤－⑥－⑦)				
	⑨퇴직연금부담금 필요경비산입 누적한도액(④－⑧)				
	⑩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(⑩)				
	⑪당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(⑨－⑩)				
	⑫필요경비산입 대상 부담금(⑫)				
	⑬당기 필요경비산입 범위액(⑪과 ⑫ 중 작은 금액)				
	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				
	⑮조정금액(⑬－⑭)				
2.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의 계산					
가. 필요경비산입 대상 보험료 등 계산	⑯퇴직연금예치금 계(⑮)				
	⑰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 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				
	⑱퇴직연금충당금 필요경비 부인누계액				
	⑲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				
	⑳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(⑰－⑱－⑲)				
	㉑필요경비 산입대상 퇴직연금 부담금(⑯－⑲)				
나. 기말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	㉒기초 퇴직연금예치금				
	㉓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				
	㉔기 퇴직연금예치금 납입액				
	㉕퇴직연금예치금 계(㉒－㉓＋㉔)				

작성 방법

1. 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란: 퇴직급여총당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9호서식)의 ㉑기말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의 ㉒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총당금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"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"을 적습니다.
3. 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부인누계액란: 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(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)을 적습니다.
4. 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란: 당기 퇴직연금부담금 총당금전입액을 적습니다.
5. ⑮조정금액란: 양수(+)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더하고, 음수(-)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.
6. ⑰기초퇴직연금총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란: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총당금 잔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의 필요경비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.
7. ⑲기중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: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8. ㉓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: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